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6.

발 의 자 : 한민수·이정현·이연희
송옥주·황 희·문진석
임오경·박균택·박해철
이주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ETN(상장지수증권)과 ETF(상장지수펀드)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,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,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·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민수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91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2(상장지수증권의 병합 및 분할에 관한 특례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21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인은 그 상장지수증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정한 일정한 날(이하 이 조에서 “병합기준일”이라 한다)에 상장지수증권이 병합된다는 뜻을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, 제37조제4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상장지수증권의 소유자와 질권자에게도 같은 날까지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전자등록된 상장지수증권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은 상장지수증권의 분할로 전자등록된 상장지수증권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·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.

제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3(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병합 및 분할에 관한 특례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4조의3에 따른 상장지

수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정한 일정한 날(이하 이 조에서 “병합기준일”이라 한다)에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 병합된다는 뜻을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,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소유자와 질권자에게도 같은 날까지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투자회사 주식의 병합에 관하여 「상법」 제4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전자등록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. 이 경우 투자회사 주식의 병합에 관하여 「상법」 제4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분할로 전자등록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·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장지수증권 등의 병합 또는 분할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장지수증권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5조의2(상장지수증권의 병합 및 분할에 관한 특례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21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인은 그 상장지수증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정한 일정한 날(이하 이 조에서 “병합기준일”이라 한다)에 상장지수증권이 병합된다는 뜻을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, 제37조제4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유자명세에 기재된 상장지수증권의 소유자와 질권자에게도 같은 날까지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전자등록된 상장지수증권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.</u> <u>③ 제1항과 제2항은 상장지수증권의 분할로 전자등록된 상장지수증권의 신규 전자등록</u>

<신 설>

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·말
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
준용한다.

제65조의3(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
의 병합 및 분할에 관한 특례)

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」 제234조의3에 따
른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발
행인은 그 상장지수집합투자증
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발행
인이 정한 일정한 날(이하 이
조에서 “병합기준일”이라 한다)
에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 병
합된다는 뜻을 병합기준일 2주
전까지 공고하고, 수익자명부
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상장
지수집합투자증권의 소유자와
질권자에게도 같은 날까지 그
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
한다. 이 경우 투자회사 주식의
병합에 관하여 「상법」 제440
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전자등록된 상장지수집합투
자증권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
효력이 생긴다. 이 경우 투자회
사 주식의 병합에 관하여 「상

법」 제4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은 상장지수
집합투자증권의 분할로 전자등
록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
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
록의 변경·말소의 전자등록을
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